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박영수

편집: 문화공보관 박종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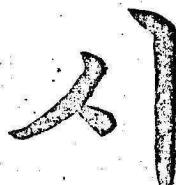
전화 75-7834

인쇄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제 798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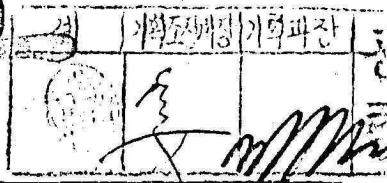
1980. 9. 6.



차



례



◎ 조례

- 제 1459 호 :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3

◎ 규칙

- 제 1873 호 :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시행규칙 중개정규칙 4
제 1874 호 :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 중개정규칙 4
제 1875 호 :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 중개정규칙 5

◎ 고지

- 제 312 호 : 도시계획사업(도로)시행허가고지 6

◎ 공고

- 제 41 호(강동구공고) :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7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조	례
---	---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"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 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"를 이에 공포한다.

1980. 9. 5.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이창갑 [3]

◎ 서울특별시 조례 제 1459 호

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
방법과학교군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

첨방법과 학교군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조중 "학교군 및 중학교"를 "학교군"으로 한다.

제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3조 (학교군) ① 학교의 분포와 지역적여건을 감안하여 별표와 같이 행정구역별로 학교군을 둔다.
 ② 학교군별 중학교 및 국민학교는 소속지역내에 소재하는 학교로 한다.
 "별표"를 벌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80.9.1부터 시행한다.

<별표>

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 학교군별

학군	지 역	비 고
1	도봉구전역	1. 교육법시행령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간의 합의하에 관할구역을 달리한 국민학교에 재학한자에 대하여는 재적 학교의 해당 학교군에 속한 것으로 본다.
2	성북구 "	2.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대성국민학교 자유의 마을 졸업자에 한해서 서울특별시에 일시 거주하는 자는 거주지가 속한 해당 학교군에 속한 것으로 본다.
3	동대문구전역	
4	성동구전역	
5	종로구 "	
6	중 구 "	
7	용산구 "	
8	은평구 "	
9	서대문구전역	
10	마포구 "	
11	강서구 "	

7-4 제798호

시

보 1980. 9. 6.

학군	지 역	비 고
12	영등포구전역	
13	구로구전역	
14	동작구 "	
15	관악구 "	
16	강남구 "	
17	강동구 "	

규

칙

서울특별시 경찰서조직규정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시행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

1980년 9월 6일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

1980년 9월 6일

◎ 서울특별시 규칙제 1873 호

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시행규칙 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 조례 다음에 "제25조의2 제1항제6호"를 삽입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◎ 서울특별시 규칙제 1874 호

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경찰서조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1 항중 "장비보급계" 다음에 "를"을 삭제하고 "및 민원봉사실을" 삽입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계실장의 배치)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장이나 실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서 배치한다.

제4조 1 항중 별표 1을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1980.9.1부터 적용한다.

<p>※ 별 첨</p> <p>(별표 1) 경찰서 과 계 사무분장표</p> <p>경무파의 경무계란중 1. "직인관주" 11. "청원경찰관임명제청" 19. "민원봉사실운영" 23. "문서의 통제수발보존관리" 26. "우표수불"을 삭제하고, 30. "의료보험업무"를 신설하며, 경리계란중 1.3. "진압장구 출납관리"를 삭제하고, 장비보급계란중 2 및 4 "통신장비제외" 앞에 "무기탄약화학장비" 및 "을 삽입하고 6. "진압장구 출납관리"를 신설하며, 장비보급계 다음에 민원봉사실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민원봉사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2. 경찰서장 직인관주 3. 경찰서장명의 문서통제 및 수발 4. 경찰문서발간 및 보존문서의 집 중관리 5. 우표수불에 관한 사항 <p>보안파의 보안계란중 4. "사격장" 다음에 "설치허가 및 "을 삽입하고 23. "산화방지협조업무"를 신설하며, 외근계란중 9. "유선업" 지도단속"을 삭제하고 17. "자활근로대관련업무"를 신설한다.</p> <p>경비파의 경비계란중 10을 "중요시설 경비의 관련업무 지도감독"으로 개정하고 24 내지 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	<p>24. 경찰무기탄약 및 화학장비의 운영관리</p> <p>25. 청원경찰의 임명제청</p> <p>26. 청원경찰 및 용역경비 관련업무 지도감독</p> <p>교통계란중 10을 삭제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 박영규 [날]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0년 9월 6일</p> <p>◎ 서울특별시 규칙 제 1875 호</p> <p>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</p> <p>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 38 조의 2 (2) 항 1호중 "나" "라"를 삭제하고 3호에 "하" 8호에 "자" "아"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. 인사계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하. 의료보험업무 8. 민원봉사실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. 경찰국장의 직인관주 아. 문서통제수발 및 보존문서관리 <p>제 39 조(2) 항 2호중 "차"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2. 외근계</p>
--	---

보 1980.9.6

차. 자활근로대 편편업무

부 칙

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고 시

⑤ 서울특별시 고시 제 312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 시행허가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60 호(74.5.11)로 지적승인 고시된 도봉구 상계동 358-14의 도시계획사업(도로)을 도시계획법 제 25 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63 호(79.12.16)에 의거 사업시행 허가하고 고시한다.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 권리
명세
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비고
도봉구 상계동	358-14	대	880 m ²	(266.2 평)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
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	관계인
도봉구 상계동		358-14	대	880 m ²	경기도 남양주시 문화도면 늑촌리 79
주소	성명	주소	성명		

아. 공사계획면도 및 공사내역 : 별첨(생략)

2. 관계도서는 '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
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
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'

1980.9.3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장 행지 : 도봉구 상계동 358-14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시행

다. 사업의 규모 : 폭 8 m 연장 110 m
면적 880 m²

라. 사업 시행자의 주소 : 경기도 남양주시
군 화도면 늑촌리 산 79 번지

마.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일
1) 차수예정일 : 사업시행허가일로
부터 7월이내
2) 준공예정일 : 1980.12.31

제 798 호 시

보 1980. 9. 6 7-7

공 고

◎ 강동구청 공고제 41호

공인개자사용승인공고

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6조2항의
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잠실4동
창 공인을 사용승인하였기 서울특

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이를
공고한다.

1. 공인개자사용 개시일자

80. . .

2. 개시된 공인명

잠실4동장의 직인 및 개인

3. 공인개자인영 : 다음

1980. . .

서울특별시 강동 구청장

다 음

공 인 의 인 영

인



영

공인명

잠실제4동장의인

잠실제4동장의개인